

# 韓國電機工業協會定款

##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韓國電機工業協會 (以下 “本會”라 한다.)라 한다.

第2條(設立) 本會는 工業發展法(以下 “法”이라 한다.)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다.

第3條(目的) 本會는 電機工業(回轉機器, 靜止機器, 電線 및 其他 電氣機器와 關聯部品 및 素材工業을 包含한다.)의 振興을 위한 事業을 效率의으로 遂行하고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共同利益을 圖謀함으로써 電機工業의 健全한 育成과 國民 經濟의 向上 發展에 寄與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事務所) 本會는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國內外에 支所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5條(公告) 本會의 公告는 서울特別市에서 發刊되는 日刊新聞에 掲載한다.

第6條(施行規程) 本定款으로 定한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 第2章 事 業

第7條(事業) ①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한다.

1. 電機工業의 發展方向에 관한 調査, 研究 事業
2.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合理化 計劃의 推進을 위한 事業
3. 電機工業의 振興을 위한 對策의 樹立 및 對政府 建議
4. 電機工業의 輸出振興 및 國際協力 事業
5. 電機工業의 生産性 向上 및 品質管理 事業
6. 電機工業의 技術開發 및 國産化推進 事業

7. 電機工業의 技術人力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訓練 事業
8. 國內外 展示會의 開催, 參加 및 周旋
9. 會員의 利益增進을 위한 共同事業 및 需要創出事業
10. 電機工業 振興을 위한 情報 蒐集, 弘報, 統計, 各種 資料의 刊行普及 및 用役事業
11. 主務部 長官이 委託한 事業
12. 위 各號의 附帶事業 및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②前項의 事業을 實施함에 있어 各號의 事項은 主務部長官에게 報告 하여야 한다.

1. 每 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收支豫算
2. 每 事業年度의 收支決算
3. 主要業務報告 및 事業實績
4. 總會의 議事錄
5. 業務等 規程의 制定 또는 改廢
6. 基本財産의 讓渡, 交換, 擔保提供 또는 起債 등 主要資産의 增減

③本會의 事業目的을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 專門 分野別로 委員會 또는 協議會를 設置 運營할 수 있다.

## 第3章 會 員

第8條(會員의 區分과 資格) ①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區分한다.

②正會員은 電機工業을 營爲하는 者로 한다.

③特別會員은 電機工業과 관련이 있는 團體, 政府投資機關, 研究機關, 學會 등으로 한다.

第9條(會員의 加入) ①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所定の 加入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하고 加入承認을 얻은 날로 부터 會員이 된다.

②本會의 會員은 會員이 된과 同時에 所定の 入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0條(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權利를 가진다.

1. 本會의 事業에 參與할 權利
2. 本會의 事業遂行에 따른 諸般 權益을 均霑할 權利
3. 本會의 任員에 對한 選舉權, 被選舉權 및 本會의 事業에 對한 議決權
4. 本會의 人的 및 物的 設備를 利用할 權利

第11條(本會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本會의 定款, 諸 規程 및 總會, 理事會의 諸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
2. 總會 또는 理事會가 定하는 바에 따른 會費等 本會의 運營을 爲하여 必要한 經費의 納付 義務
3. 本會의 事業遂行을 爲하여 必要로 하는 資料提出等 諸般 事業遂行에 協助할 義務
4. 事業體의 名稱, 代表者, 事業所 또는 事業의 休·廢業 등 重要 變更事項의 申告 義務

第12條(本會의 脫退) ①會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當然히 脫退된다.

1. 會員資格의 喪失
2. 禁治産, 破産宣告
3. 除名

②會員은 脫退願을 提出함으로써 任意로 脫退할 수 있으며 脫退와 同時에 本會에 對한 權利를 喪失하고 義務를 免한다.

③脫退된 會員이 이미 納付한 一切의 納付金은 返還하지 아니한다.

第13條(會員의 制裁) 本會의 會員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除名處分 등 制裁를 할 수 있다.

1. 本會의 名譽를 顯著히 毀損하거나 利益을 損傷시켰을 때
2. 本會의 事業遂行을 甚히 妨害하려는 行爲

가 있을 때

3. 定款, 規程 또는 諸 議決事項을 違反하였을 때
4. 本會에 納入할 負擔金を 1年 以上 納入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除名處分을 받은 會員은 1年 以內에 再加入 할 수 없다.

第14條(會員地位의 承繼) ①合併, 其他 營業權의 讓受로 權利 義務를 承繼한 者는 權利義務에 對한 承繼를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承繼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30日 以內에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를 할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合併 其他 營業權의 讓受가 있는 때에 本會의 會員이 된 것으로 한다.

## 第4章 任 員

第15條(任員) 本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若干名
3. 常勤副會長 또는 專務理事 1名
4. 理事 若干名
5. 理事(常勤) 若干名
6. 監事 2名 以內

第16條(任員의 選任 및 報酬) ①會長은 非常勤 職으로 하며 本會의 正會員 中에서 選任한다.

②常勤任員은 有給으로 하며 其他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名譽職 任員에 對하여는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本會의 任員 中 非常勤 任員은 總會에서 選任하고 常勤任員은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適任者를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다만, 常勤理事는 會員職

을 겸할 수 없으며,總會 및 理事會에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

④會長 및 常勤任員의 選任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7條(任員의 任期) ①會長·副會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補闕에 의하여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任員의 任期가 定期總會 開催前에 滿了될 때에는 그 定期總會가 終了되기까지 이를 延長한다.

④本會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當該 企業體에서 退任하였을 때에는 後任者가 이를 承繼한다.

第18條(任員의 職務) ①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業務를 統理하며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不在時에는 副會長 中 會長이 指名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常勤任員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 執行 處理한다.

④監事는 本會의 財産 및 事業執行의 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19條(名譽會長) 本會는 名譽會長을 둘 수 있으며, 本會 會長을 歷任한 者 中에서 理事會가 選任한다.

## 第5章 總 會

第20條(總會의 種類) ①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定期總會는 每 事業年度마다 1回 開催하며 事業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開催하여야 한다.

③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開催한다.

1. 理事會의 議決이 있을 때
2. 會員 3分の 1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3.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4. 監事 全員の 要請이 있을 때

第21條(總會의 召集) ①總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總會의 召集은 會議開催 1週日 前에 會議의 目的, 日時 및 場所를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總會의 議決方法) ①總會는 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議決은 出席者의 過半數로 하고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會長이 決定한다.

②定款의 變更, 解散 등 特히 重要한 事項은 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會員은 代理人으로 하여금 總會의 議決權을 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代理人은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23條(總會의 議決事項) ①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定款의 變更
2. 非常勤任員의 選任 및 解任
3. 會費 등 會員의 經濟的 負擔이 되는 事項
4. 事業報告 및 事業計劃의 承認
5. 收支豫算 및 決算의 承認
6. 本會 解散에 關한 事項
7. 本會 運營上 重要한 事項으로 理事會에서 附議된 事項
8.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第1項 1號의 事項은 主務部長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第1項 3號의 事項 및 委任을 議決한 事項은 理事會에 委任 할 수 있다.

第24條(總會의 議事錄) 總會의 議事錄은 議長

과 出席任員 2人 以上이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 第6章 理 事 會

第25條(理事會의 構成) ①理事會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②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26條(理事會의 召集) ①理事會는 다음의 境遇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理事 3分の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第27條(理事會의 議決方法) ①理事會는 在籍 理事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會長이 이를 議決한다.

②不得已한 事由로 理事會를 召集할 餘裕가 없거나 輕微한 事項에 대하여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③理事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理事會의 議決權을 行하게 할 수 있다.

第28條(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總會 附議 事項
2. 會員에 對한 制裁에 關한 事項
3. 諸 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4. 主要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5. 支所 및 出張所 設置에 關한 事項
6. 起債와 그 償還
7. 豫算項目 轉用承認 및 豫備費 執行에 關한 事項
8. 常勤任員의 任免承認에 關한 事項
9.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
10. 諸 委員會 運營에 關한 事項
11. 其他 本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

第29條(理事會의 議事錄 作成) 理事會 議事錄 作成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議事錄

作成規程을 準用한다.

## 第7章 機 構

第30條(機構) 本會의 圓滑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部署와 職員을 둔다.

第31條(職制 및 定員) 本會의 職制, 職級別 定員 및 報酬에 關한 事項은 別途 規程에서 定한다.

第32條(職員의 任免)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 第8章 會 計

第33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 부터 12月 31日 까지로 한다.

第34條(會計의 區分)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第35條(財源) 本會의 財源은 會費, 入會費, 手數料, 事業收入, 寄附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 第9章 解散 및 清算

第36條(解散) 本會는 民法 第77條의 事由가 發生할 境遇 解散한다.

第37條(殘與財産 등 整理) 本會가 解散할 境遇 清算 完了後의 殘與財産 등에 對하여는 主務 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本會의 設立 目的과 符合되게 處理한다.

## 附 則

(施行日) 本 定款은 商工部長官이 承認한 날로부터 施行한다.